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교통지도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15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3년 11월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성북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,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존속기한 연장 (안 제8조)

○ 2023년 12월 31일 → 2028년 12월 31일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1)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

2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사항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23. 9. 27. ~ 2023. 10. 17

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3)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4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대상아님
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 대상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존속기한) 회계의 존속기 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4항에 따 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8조(존속기한) ---- 2028년 12 월 31일 ----- ----- -----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개정조례안은 기 시행중인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, 이로 인한 별도의 예산 증·감이 발생하지 않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2항 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미첨부함

4. 작성자

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 장기성